

#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8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11. .  
제출자 : 하남시장

## 1. 개정이유

- 하수도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 및 낮은 현실화율에 따라 경영 적자 해소가 필요함
- 하수도사용료를 3년간 단계적 53%까지 인상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2024년 3월부터 2026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6.44% 인상  
(안 별표1)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## 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 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## 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년 8월 31일 ~ 9월 20일(20일)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## **8. 부서협의 결과**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## **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**

## **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수질관리과**

##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부서명		하수도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하수도과장 김 현 아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하수행정팀장 윤 인 진
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혜 준 031-790-5569

[별표 1]

공공하수도 사용 요금표 (제11조제2·3항 관련)

업종별	사용량(m <sup>3</sup> /월)	적용시기 및 단가(원)		
		2024년 3월 고지분부터	2025년 1월 고지분부터	2026년 1월 고지분부터
가정용	0~20	417	444	473
	21~30	584	622	662
	31이상	964	1,026	1,093
일반용	1~100	748	796	848
	101~300	969	1,031	1,097
	301~1000	1,342	1,429	1,521
	1001~2000	1,871	1,992	2,120
	2001이상	3,738	3,979	4,235
대중탕용	0~1000	1,718	1,829	1,946
	1001~1500	1,962	2,088	2,222
	1501~2000	2,209	2,351	2,502
	2001이상	3,097	3,297	3,509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별표 1					별표 1				
업종별	사용량(m <sup>3</sup> /월)	적용시기 및 단가(원)			업종별	사용량(m <sup>3</sup> /월)	적용시기 및 단가(원)		
		2021년 3월 고지분 부터	2022년 1월 고지분 부터	2023년 1월 고지분 부터			2024년 3월 고지분 부터	2025년 1월 고지분 부터	2026년 1월 고지분 부터
가정용	0~20	346	368	392	가정용	0~20	417	444	473
	21~30	484	515	549		21~30	584	622	662
	31이상	799	851	906		31이상	964	1,026	1,093
일반용	1~100	621	661	703	일반용	1~100	748	796	848
	101~300	804	855	910		101~300	969	1,031	1,097
	301~1000	1,113	1,185	1,261		301~1000	1,342	1,429	1,521
	1001~2000	1,552	1,652	1,758		1001~2000	1,871	1,992	2,120
	2001이상	3,100	3,299	3,512		2001이상	3,738	3,979	4,235
대중 탕용	0~1000	1,424	1,516	1,614	대중 탕용	0~1000	1,718	1,829	1,946
	1001~1500	1,626	1,731	1,843		1001~1500	1,962	2,088	2,222
	1501~2000	1,832	1,950	2,075		1501~2000	2,209	2,351	2,502
	2001이상	2,568	2,734	2,910		2001이상	3,097	3,297	3,509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1 「지방공기업법」

[시행 2022. 7. 12.] [법률 제18747호, 2022. 1. 11., 일부개정]

제22조(요금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,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,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,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
### 2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

[시행 2022. 7. 12.] [대통령령 제32792호, 2022. 7. 11., 일부개정]

#### □ 지방공기업법 시행령

제18조(요금의 산정방식)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.

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### 3 「하수도법」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127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제65조(사용료 등)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

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.

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, 부과단가, 재원부족액, 총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.